2022학년도

전주초등학교 교육과정 설명회

학 부 모 교 육

목 차

- ▶학교폭력예방교육
-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예방교육
- ▶인권교육
- ▶성폭력예방교육
- ▶교권보호교육
- ▶공교육정상화법
- ▶부정청탁금지법
- ▶정보통신 윤리교육
- ▶학부모 보건교육
- ▶도박예방교육

학교폭력 예방 교육

(학교폭력 예방법 개정안내 및 가정에서의 학교폭력 예방)

1. 학교폭력 가해자 피해자 징후

학교폭력 가해자	학교폭력 피해자
 사주지 않은 물건을 친구에게 받았다고 한다.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외출이 잦아진다. 인내심이 부족하고 화를 잘 내며 충동적이다. 갑자기 돈 씀씀이가 커진다. 핸드폰 화면을 가리거나 내용을 숨기려 한다. 	 용돈이 모자라다고 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돈을 요구한다. 밥을 잘 먹지 못하고 말이 없어지기도 한다. 자주 몸이 아프며 학교 가는 것을 싫어한다. 옷, 운동화 등 소지품을 자주 잃어버린다.

2.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님의 역할

- ◈ 내 자녀도 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 ◈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자녀의 상황 및 교우관계를 파악합니다.
- ◈ 자녀에게 생명의 존귀함, 상호 인권 존중, 역지사지, 책임 및 준법 의식 등을 가르칩니다.
- ◈ 혹시 학교폭력을 인지하셨다면 아이를 탓하거나, 자책하거나, 힘든 내색이나 문제를 회피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복 역시 아이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아이를 보듬어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 ◈ 꼭 담임 선생님과 의논하여 학교-가정에서 공동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합니다.
- ◈ 어른들 스스로 자신의 삶을 기꾸고, 자녀를 존중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폐지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신설

-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이전과 마찬가지로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사안을 조사하지만, 사안에 대한 조치 결정은 전주교육지원청 산하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4. 학교폭력전담기구 개편

-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접수 및 조사하게 됩니다. 다만 이전과 달리 올해부터는 학교폭력전담기구에 학부모위원이 의무적으로 참석하게 됩니다. <u>학부모위원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u>으로 구성됩니다.
-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는 접수된 사안을 학교장 자체해결로 처리할지, 교육지원청 산하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사안을 심의·처리하게 될지 검토하게 됩니다.
- 학교장 자체해결로 사안을 종결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재산상의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5.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학생 조치 안내

피해학생 보호조치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가해학생 선도조치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학급교체 8.강제전학

6.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 교육지원청 산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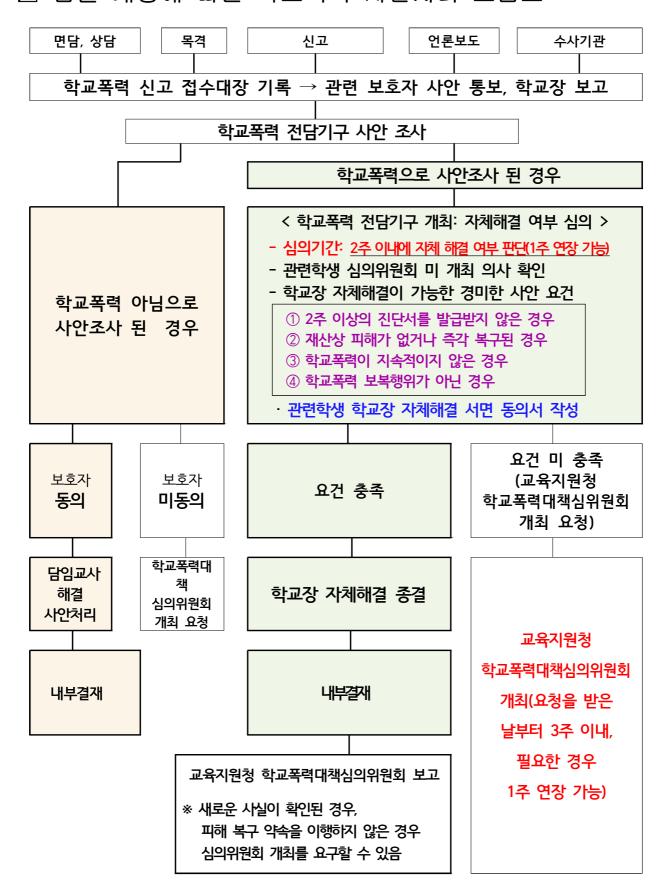
행정심판	- 청구기간: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 청구 기관: 전라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jbe.simpan.go.kr / 063)239-3547)
행정소송	- 재소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행정심판을 거친 뒤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기간을 계산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복은 해당 사안을 심의·처분 결정한 교육장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7. 학교폭력 피해 도움 요청 기관

-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 ☎117, #117(문자), www.safe182.go.kr
- •학부모 ON누리 <u>www.parents.go.kr</u>

☑ 법률 개정에 따른 학교폭력 사안처리 흐름도



가정 폭력과 아동 학대 예방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아동 학대의 정의

-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 3조 제 1호)
- ☞ 보호자 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아동복지법 제 3조 제 3호)
- ☞'아동 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 4호)
 - 1) 형법에 의한 죄
 - -상해,폭행,유기,학대,체포,감금,협박,약취,유인,인신매매,강간,추행,명예훼손,모욕,강요,공갈,재물 손과 등
 - 2) 아동복지법에 의한 죄
 -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유기, 방임 등
 - 3)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된 범죄
 -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중상해, 상습범

*아동 학대와 학교폭력

	구분	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	학교폭력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관련 법령	이중국시합 	관한 특례법	법률	
	가해의 주체 보호자를 비롯한 성인		보호자	제한없음
	가해의 객체	아동 (18세미만)	아동 (18세미만)	학생

⁻학교폭력은 가해 주체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가해의 주체가 보호자를 비롯한 성인으로 제한되는 아동학대와는 차이가 있다.

*아동 학대 발견시 조치 요령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직무상 아동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의 시민들에게는 신고 의무 부여 "신고의무자들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경우에는 즉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발견즉시 112 신고, 증거 확보	
2	피해학생 보호조치 및 학부모 연락 학교장 및 교육(지원)청 보고	관련기관 연계 및 학적사항 지원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3	피해학생 회복지원, 수사결과에 따른 조치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최고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아동복지법 제25조 제2항>

* 가정폭력이란?

-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가족구성원'이란 배우자, 전배우자.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와 기타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흔히 신체적 폭력만을 가정폭력이라고 생각하지만 형법에 규정된 **가정폭력범죄**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수거 . 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등이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

☞ 가해자

- 가해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 제5호)

☞ 가정폭력피해자

- 가정폭력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 (「가정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 2조 제 5호)

*가정 폭력의 유형

	가정 폭력의 유형	폭력의 예시
1	강제, 위협하기	때리거나 자살하겠다고 위협 하기 등
2	협박	눈빛, 행동, 제스처로 협박, 물건파괴, 애완동물학대, 무기 전시 등
3	정서적 학대	무시하기,죄책감이나 모욕감 느끼게 하기 등
4	고립	배우자가 있는 장소 추적하기, 만나는 사람 통제하기
5	부인, 비난	배우자가 폭력을 유발한 것처럼 말하기 등
, 3114 010		아이들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떼어놓겠다고 위협하기, 배우자를 학대하는 장면을 아이들
6	자녀 이용	에게 보여주기
7	경제적 학대	직업을 갖지 못하게 하기, 허락을 구해 돈을 사용하게 하기 등
8	남성적 특권 이용	아내를 하인처럼 취급하기, 모든 결정을 남편이 혼자하기 등

*가정 폭력 신고 및 도움요청

여성 긴급 전화 (1366)	가정폭력 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 365일 24시간 개입 상담 • 긴급 피난처 운영: 7일이내 긴급보호 • 지역관련 기관 연계 (쉼터,법률,의료 등) • 13개국 이주여성 자국어 상담, 통역서 비스 지원 • 이주여성쉼터 연계	•평일: 9:00 ~ 18:00 정기적인 상담 •가해자 교정 및 치료 프로그램운영 •피해자 치료 및 회복 프로그램운영 •가정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 •부부 및 집단 상담 •지역 관련 기관 연계	

학부모를 위한 인권교육

도덕성, 우리 아이의 경쟁력



아이의 손을 잡고 무단횡단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이의 봉사활동을 대신 해 주신 적이 있나요?



도덕성의 힘을 아시나요? 부모님의 모습이 아이의 도덕성에 영향을 줍니다. 도덕성이 높은 아이는 도덕성이 낮은 아이보다 자제력(참을성), 집중력이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 가 있습니다. 도덕성이 높은 아이는 모든 일에서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명확한 판단 기준에 따라 행동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도덕성을 갖춘 지도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도덕성을 갖춘 경쟁력 있는 아이로 키워 주세요.

☑ 도덕성을 길러주기 위한 부모의 올바른 훈육법

□아이에게 선태의 기회를 줌으로써 도덕적 갈등 해결 능력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아이가 선택의 기로에 설 때 정직을 우선으로 하는 선택을 하게 하고, 그 선택에 대해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부모의 본보기로 자연스럽게 도덕성을 길러 주어야 합니다.

말로는 도덕성을 강조하지만 정작 부모가 아이 앞에서 도덕적이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된다면 아이는 혼란스러워 합니다. 부모의 도덕적 본보기가 필요합니다.

□무조건적인 칭찬보다는 과정을 살펴가며 잘한 점을 칭찬해야 합니다.

결과만 칭찬하면 위험합니다. 칭찬을 받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쓸 수 있기 때문이지요. 또 결과만 칭찬하면 아이가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좌절하기 쉽습니다.

□잘못은 묵인하지 말고 지적하여 고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잘못을 묵인하여 그 잘못이 반복되면 점차 도덕성이 낮아집니다.

D

지금, 나부터, 모두 함께 실천해요

- · 교통 신호 지키기
- 아이의 숙제는 스스로 하도록 하기
- 아이에게 결정할 수 있는 기회 주기
- 과정을 살펴가며 칭찬하기
- 잘못은 묵인하지 말고 고치도록 지도하기



1

3

가정에서의 성폭력 예방 교육

최근 우리 사회는 성의 자유화와 개방 풍조로 인해 인터넷 음란물, 드라마, 광고 등을 통해 성적으로 미숙한 어린이들이 왜곡된 성문화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습니다. 올바른 성지식과 건전한 성의식을 통해 건강하고 아름다운 성문화를 가꾸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녀와 함께 읽고 대화하면서, 성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애매한 질문? 쿨한 대답!

자녀의 질문	바람직한 대답	바람직하지 않은 대답
"어른이 결혼을 하면 깊은 사랑을 하게 되지. 그 때 아빠의 음경이 엄마의 질 속으로 정자를 보내게 되고 정자는 난자를 만나 수정하게 되면 아기가 생긴단다."		"어머머! "별걸 다 알려고 하네" "쓸데없는데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해라"
"아기는 어디서 자라요?"	"엄마 뱃속에 아기가 자라는 궁궐이 있는데 자궁 어디서 자라요?" 이라는 곳이야. 그곳에서 약 280일 정도 자란단 다."	
"소변과 대변이 나오는 길이 있듯이 아기가 나오는 길을 질(산도)이라고 해. 요도와 항문 사이에 있는 질(산도)을 통해 아기가 탄생한단다."		"크면 알게 돼" "배꼽에서 나오지" "다리 밑으로 나오지"
"아기는 어떻게 먹어요?"	"엄마가 먹는 음식의 영양분과 산소는 탯줄을 통해서 아기에게 전달된단다. 물론 나쁜 음식이나해로운 담배연기도 전달되지. 그래서 아기를 가졌을 때는 좋은 음식을 가려서 먹어야 하는 거란다."	"엄마가 먹으면 자연히 아기도 먹게 돼"

2 음란물과 음란사이트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음란물은 성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중독되는 특성이 있으며, **최종적으로 음란물에** 나오는 것을 따라하게 되어 자신도 모르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아이들이 음란물, 음란사이트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정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스마트폰, 컴퓨터 등 사용지도, 유해 사이트, 유해영상 차단프로그램 설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귀 기울여 주세요.

◈ 내 아이가 성폭력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해서는 안되는 행동을 지도해주세요.

- 다른 사람의 외모나 사생활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신체 접촉이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허락을 구하도록 가르칩니다.)
- 또래 사이에 장난이라고 생각하는 성적인 행동들을 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거절을 표현했을 때에는 즉각 중지하도록 가르칩니다.

◈ 내 아이가 성폭력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법과 상황별 대처방법을 가르쳐주세요.

- 부모 허락 없이는 누구도(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않도록 하세요.
- 집에 혼자 있을 때 가족 외에는 문을 열어주지 않도록 하세요.
- 아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어른에게는'다른 어른에게 부탁 하세요'라고 거절해도 된다고 알려 주세요.
- 학교에 너무 이른 시간엔 혼자 등교하지 않도록 하고, 학원이나 학교에 혼자 남아 있지 않도록 지도합니다.
- 집 주변 등하교길 학원 오가는 길 등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주의를 기울여 지도합니다.
- ※ 우리 집(학교) 근처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 *성범죄자 알림-e* (www.sexoffender.go.kr), 스마트폰 앱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 확인방법 -



① 앱스토어에서 '성범죄자 알림e'앱

4



② 본인인증



③ 지도검색



④ 성범죄자 확인

사이버 성폭력 예방을 위해 다음 사항들을 점검해주세요.

- 자녀가 소지하고 있는 핸드폰(스마트폰 등)의 저장메모리를 수시로 점검합니다.
- 저장된 개인정보 및 사진 등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지 않도록 합니다.
- 다른 사람에게 성과 관련된 문자나 메일을 보내지 않도록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 요령 안내

& 어떤 것이 디지털 성범죄인가요?

디지털 성범죄는 개인 간의 사소한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에 해당하며, 현행법으로도 처벌되고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불법 촬영

치마 속, 뒷모습, 전신, 얼굴, 나체 등 용변보는 행위, 성행위 등

유포 협박

가족이나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 이별 후 재회를 요구하며 협박, 유포 협박으로 금전 요구 등

비동의 유포, 재유포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SNS 등에 업로드, 단톡방에 유포

사진 합성

피해자의 일상적 사진을 성적인 사진과 합성 후 유포(소위 지인 능욕)

유통, 공유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SNS 등의 사업자 및 이용자

성적 괴롭힘

사이버 공간 내에서 성적 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행위 &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해 촬영물, URL 등의 증거 확보

 \Rightarrow

상담신청 www.women1366.kr/stopds 전화 02-735-8994

 \Rightarrow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삭제요청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대해 궁금해요.

O1.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에서 운영하는 센터이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라면 누구나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T.02-735-8994)

Q3. 삭제 지원은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네. 기본적인 상담과 삭제 지원은 모두 별도의 비용 지불 없이,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삭제 지원과 관련하여일정 주기로 삭제 지원 결과/모니터링 리포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재유포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타'법률의료심리치유 지원' 등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관련 기관 연계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Q5. 삭제 지원을 요청하면 바로 삭제가 되나요?

피해 촬영물이 업로드되는 플랫폼에 따라 삭제에 소요되는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평균적으로 3~4일 정 도의 시간이 필요하며 보다 신속한 삭제 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기관과의 연계와 협력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Q7. 가해자가 누군지 모르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경찰 신고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가해자를 유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유포 시기, 유포 ID 등) 확보가 필요합니다. 가해자 신원이 파악되지 않더라도 삭제 지원에 필요한 근거자료가 수집된 경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상담 및 삭제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2.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지속적인 **상담과 피해 촬영물에 대한 삭제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와 관련 연계 기관을 활용하여 피해자가 원하는 수사와 법률 등의 지원, 의료·심리치유 지원, 쉼터로의 연결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Q4. 삭제 지원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우선 온라인 상담 게시판이나 전화 접수를 통해 상담을 신청 해주시면 됩니다. 상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 유형에 따른 삭제 지원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삭제 지원이 진행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보는 ①직접 소통 가능한 연락처, ②피해 촬영물을 특정할 수 있는 단어, ③피해 촬영물이 게재된 사이트의 캡쳐화면, ④사이트의 URL, ⑤원본 영상등이 있습니다.

Q6.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속적으로 상담 및 삭제지원이 가능합니다. 삭제지원의 경우 피해 촬영물 유포 범위에 따라 일정 기간의 집중지원 후 추 가 유포물이 있는지 확인하는 모니터링 지원으로 전환됩니다. 재유포를 포함하여 피해 촬영물이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경우 집중지원 기간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Q8. 가해자가 가족이라 나왔는데 갈 곳이 없어요.

여성긴급전화 1366,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하여 연계 보호 시설에서 임시로 머물면서 숙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디 지털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쉼터 연계 이외에도 무료 법률의 료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통념깨기

01. 성관계 영상 촬영에 동의했으면 유포되는 것도 자기 책임 아닌가요? No.

동의 없이 성적 촬영물이 유포되었다면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는 결코 유포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지 않으며 촬영 당시에 동의하였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02. 몰래 찍힌 사진, 몰래 유포한 영상 등을 다운로드하거나 보기만 하는 것은 죄가 아니지 않나요? No!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의거 아동·청소년 대상의 영상은 다운로드 및 소지,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 아니더라도 피해 영상물을 다운로드하거나 보는 것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확산하는 2차 가해 행위입니다.

03. 디지털 장의사에게 의뢰하는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No!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경우 **삭제지원 비용이 무료이며, 삭제 지원 외의 상담,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연계**(수사법률의로)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04. 과거에 유포한 가해자를 신고하고 영상(사진)을 삭제했는데, 영상(사진)이 또 유포되었어요. 재유포된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No.

디지털성범죄는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하기 때문에 삭제한 영상이 재유포되는 등 피해가 재발생, 재확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원센터에서는 재유포 피해 또한 지원하고 있으며, 제공받을 수 있는 지원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http://www.stop.or.kr)

₼ 전라북도 (디지털)성범죄 신고기관 안내

기관	전화번호
전북지방경찰청 여성보호계	063-280-8133
전북지방경찰청 아동청소년계	063-280-8134
전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	063-280-8149

↔ 전라북도 (디지털)성범죄 전문상담 기관 안내

지역명	시설명	전화번호	운영 주체
	성폭력 예방 치료센터 부설(완산구)	236-0151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새벽이슬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완산구)	223-3015	사)행복나 눔 지원센터
	호남 성폭력 상담소	286-1366	개인
전주	전북해바라기센터(수사 지원)	278-0117	전북대병원
	해바라기센터(아동-치료지원)	246-1375	여성가족부
	대한법률구조공단	251-4034	대한법 률구조공 단
	여성긴급전화 1366	063-1366	여성가족부
군산	군산 성폭력 상담소(월명동)	442-1570	개인
<u> 군</u> 인	로뎀 성폭력 상담소(미원동)	445-9192	개인
	익산 성폭력 상담소(남중동)	834-1366	개인
익산	전북서부해바라기센터 (수사 및 치료 통합지원)	859-1375	원광대병원
정읍	성폭력 예방 치료센터 정읍지부 산하 성폭력 상담소 (수성동)	537-1366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남원	남원 YWCA(향교동)	625-1316	사)남원 YWCA통합상담소
김제	성폭력 예방 치료센터 김제지부	546-8366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행복한 교사가 행복한 교육을 만듭니다. 교사가 흔들리면 학생도 흔들립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양질의 교육을 만들고 양질의 교육은 건강한 인재를 만듭니다.

차례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교육활동 침해 행위란?
-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조치
 -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 학생 외 침해자에 대한 조치
 -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안처리 절차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분쟁조정
- 학부모와 함께하는 행복 학교 만들기
 -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하면 안 되는 이유
 - 학교 교육 환경 이해하기
 - 교원의 교육활동이 침해될 수 있는 상황
- 가정에서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 학부모의 정립한 교육활동 참여
 - 가정교육의 중요성 인식하기 및 교원과 학부모의 관계 재정립하기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



교원지위법 (약칭) 변천 과정

법률

용「교원의 지위 평상을 닦한 폭벌법」 (2006년3 방문제:1995으로 개인되기전의것)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규정 부존재

류 '교원의 지위암상 및 교육원동, 보호원 위한 특성명:

- 교육활동 중에 폭행이나 모음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하여 적절한 치 유와 교권 회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침 해학장에게는 특별교육이나 싱리치료 를 받게 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제명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보호 를 위한 특별법" 으로 변경함.

(현행) "교환당지위함상 및 교육활동 보호용 위한 특별별,

- 점해에 대해 학교고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가쳐 전화, 퇴학 등을 포함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해결교목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할 의무가 있는 보호자가 참여하지 아니만 경우에 과목표를 부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용조치를 강화함
- 피하고원에 대한 법률상당 특별휴가, 심리상당 및 조인 등 보호조치의 근거를 강화함

(현행) 「교원의 지위함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사행령」

대통령령

음 '교원 메우에 관한 유영」 (2013. 3. 23. 다통령령 24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도 교육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작 수립·시행 의무, 시·도 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등이 규정됨. ·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라 교육활동 점 해방위의 구체적 유형 및 교원치유지 원센터의 자정 요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용「교원의 지위한상 및 교육원동 보호를 위한 독급법 시민정」 (대통령은 제27418호 2016 B 2 공모 84 시민

 제명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을 '교원 의 지위 항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변경함.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라 교원의 보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범위, 교육활동 참패명구등 법 환명에 대한 조치별 작동 합량 등 합물에서 위임된 사람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람을 규정함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

BARA

왜 교원지위법은 '교권 보호·침해' 대신 '교육활동 보호·침해' 라고



"

교 <mark>권</mark>은 권익주체인 교원에게는 등통적인 개념이지만, 학생 및 학부모에게는 피통적인 개념입니다. 일부에서는 교권을 학생학부모의 권익과 상충되는 개념으로 여기고, 교권남용을 이유로 교권에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활동을 하는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교원뿐만 아니라 교육현장에 큰 피해를 줍니다. 수업 등 교육활동을 하는 교원이 보호받지 못하면서 학생들의 교육활동 또한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에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특정 위법행위를 직접 규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교원지위법은 '교권 침해' 대신 '교육활동 침해'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보호 측면에서 교원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은 모든 교육주제가 함유하는 공통의 이익이므로, 교육활동을 보호함에 있어서 교육주제간 이견이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교원 보호의 궁극적인 목적이 교육활동 보호에 있다면, 학생과 학부모 또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33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교원지위법 제 15조 제1항)

교육활동 침해주체

O 교육활동 침해객체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

교육활동 중인 교원

학교관리자나 동료 교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나요?

학교관리자나 동료 교원에 의해서도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나, 교육활동과 관련되어야 합니다. 업무분장, 관리자의 복무관리 또는 행정사항에 대한 지시 등 교육활동과 관계없이 발생한 분쟁 사안은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아닙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내용

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 ① 형법」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과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
- ④ 통행위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 행이 고시 제2조



- 「형법」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②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③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 4 그 밖에 학교장이「교육공무원법」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BURY STATE

폭행, 상해(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제1호)



- 사람의 신제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거나(폭행)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상해)
- ②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교원의 신체를 밀치거나 멱살을 잡고 흔든 경우
 - · 큰소리로 폭언을 하여 피해교원이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하고, 우울병 등으로 6주간 치료를 요하게 한 경우

협박(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제1호)

- 1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구체적) 해약을 고지하는 행위
- ②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 학교폭력 은폐사실을 알려 피해 교원을 징계받게 하겠다 라고 말한 경우
 - 위험한 물건을 피해교원의 목에 겨누면서 찌를 것처럼 한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명예훼손(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제1호)



- 3 공연(公然)히 특정 사람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드러내어)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 ②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다른 학부모들에게 "담임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았다"라고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여 교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모욕(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제1호)

- ①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특정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
- ②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교사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
 - · 교사의 신체적 특징을 지칭하며 경멸적인 언행을 하는 경우
 - 수업태도를 바로 하라는 교사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올려 보인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손괴(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제1호)

- ①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과,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는
- 2 행위
 - 수업 중 지도하는 교사에 대한 불만으로 교실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서 깨는 경우
 - · 출석부, 교사의 업무수첩 등을 뜯어내어 훼손하거나 감추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성범죄 (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제2호)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의 성범죄행위
- ②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수업 중 교원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경우
 - · 휴대 전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교원의 신제를 몰래 촬영한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제3호)

- ① 비방의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는 행위
 - ②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보내는 행위
 - ③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 ②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카페 자유게시판에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폭행, 학대하고, 이를 따지는 학부모에게 욕설과 협박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해당 교사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게 게시한 경우
 · 담임교사에게 불만을 품고, 새벽시간을 포함한 수 일 동안 "죄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교사의) 자손들이 장래 불행할 것이다"라는 등의 저주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수 십여 차례 보내 교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공무집행방해 / 업무방해(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제4호,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 ① 공무집행방해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협박 또는 위계를 함으로써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 업무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②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학생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괴롭힌 학생을 혼내준다며, 수업 중인 교실로 들어가 관련 학생들을 교실 밖으로 불러내 무릎을 꿇게 하고, 이를 만류하는 교사를 협박하여 수업 진행을 방해한 경우



성희롱 행위(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제4호,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 ①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②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 수업시간 중 교사에게 "가슴이 없어서 등 인줄 알았어요" 등 성희롱 발언을 한 경우
 - · 성적인 물건(피임용품)이나 야한 사진을 교사가 볼 수 있도록 교탁 위에 놓거나 교사의 동선상에 떨어뜨려 놓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 ②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채육교사에게 '수업시간에 야외 채육활동을 하지 말고 자습을 시키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 시험 평가에 관하여 교사에게'시험범위를 줄이라', '시험문제를 왜 이렇게 어렵게 내냐? 쉽게 내라'라며 반복적으로 요구-간섭하는 경우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

- ① 교원지위법 및 교육부장관 고시에 규정되지 않은 유형일지라도 교권존중에 위반하는 행위
- 학교장이 판단한다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교사를 무시하며 학생들에게 교사의 말을 듣지 말라고 종용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조치



1.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개정 교원지위법이전 <시광암2019, 10, 17.) 이전	개정 교원지위법이후 《시행인(2019, 10, 17,)>
근거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31 조	「교원지위법제17조
가능한 조치	① 학교내의봉사 ② 사회봉사 ③ 특별교육이수 ④ 1회 10일 이내 연간30일 이내의출석정지 ⑤ 퇴학처분퇴학 처분은의무교육대상자에는적용 안 됨)	① 학교에서의봉사 ② 사회봉사 ③ 학내외전문가에의한특별교육이수또는심리치료 ④ 출석정지 ⑤ 학급교제 ⑥ 전학 ⑦ 퇴학처분퇴학처분은의무교육대상자에는적용만됨)

- 조치 결정 시 세부기준
 - 침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침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선도가능성, 피해 교원과의 관계 회복 정도, 피해 교원의 임신·장애 여부와 정도, 침해학생의 장애 여부와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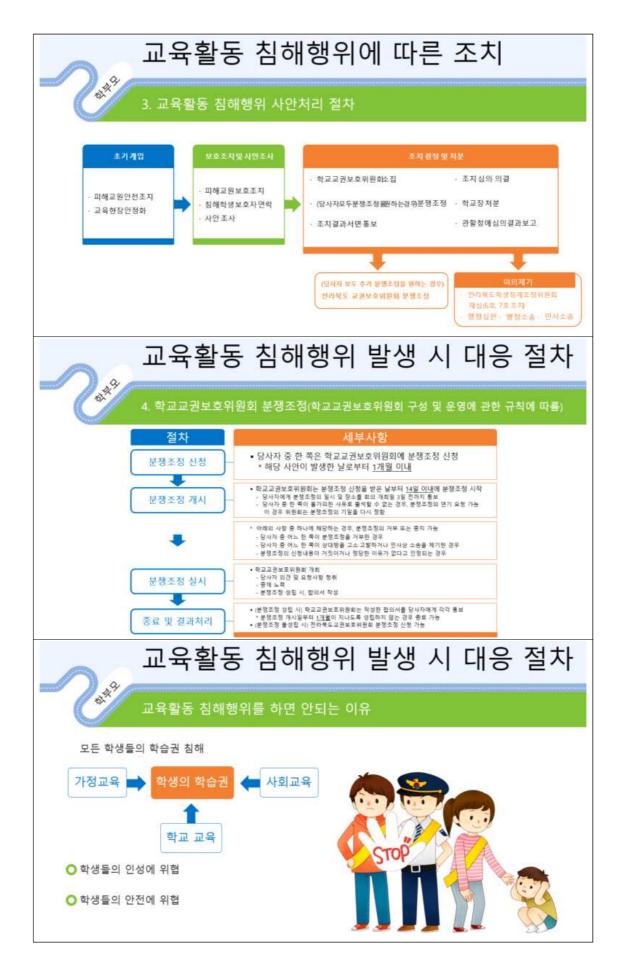


2. 학생 외 침해자에 대한 조치

학생 외 교육활동 침해자에 대한 조치

- · 형사 고소, 고발
- ·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통지
- ·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가능





학부모와 함께하는 행복 학교 만들기



학교교육환경 이해하기 1. 학교의 업무 상황

교육활동

교사들은 학기 중 분만 아니라, 방학 중에도 작중 연수(직무, 자격, 자용연수 등)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능용적으로



학교에는 채육대회 뿐만 아니라 입학식, 출입식, 수학여명, 학술제, 학생교류, 대피 문한 등 학교 상황에 맞는 다양한 활동이 많고, 유근가운 (검찰서, 소방서 등)과 협조하고 있습니다.



학교 행사

교사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 입니다. 성적에 대한 민원제기가 많고, 수업-명가 기록이 일원화되어 업무부당이 더 터지고 있습니다.



교무행정업무



학부모와 함께하는 행복 학교 만들기



학교교육환경 이해하기 2.업무영역확대

- 교사 중심에서 학생 중심 교육환경으로 변화
- · 다문화 학생 증가 및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교육, 배려 필요
- 학생의 정신과 육체 건강을 위해 급식, 영양, 상담 등 중요
- 미세먼지 증가, 각종 전염병 등으로 학생 보건교육 필요



























학부모와 함께하는 행복 학교 만들기



학교교육환경 이해하기 3. 학생 특성 이해 및 생활지도 업무의 어려움















학생들의 다양한 특성으로 개별적인 교육은 쉽지 않고,부족 한 타인 배려와 목력적인 환경에서 학생의 비행은 점점 온탈 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생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교사의 역할은 여러 이유로 약 혀 있어 아쉽습니다.











학부모와 함께하는 행복 학교 만들기



교원의 교육활동이 침해 될 수 있는 상황

< 이럴 때는 이렇게! > 자녀가 안전사고가 난 경우

제 자녀가 학교 놀이기구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었습니다. 치료절차 및 출결, 그리고 보상 관계에 대하여 담임 선생님에게 문의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학생들은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학부모님께서는 자녀가 다쳐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시다가 목소리가 커져 선생님과 갈등이 시작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에게 질문을 할 때에는 먼저 아이에게 연락을 받은 즉시 하시는 것 보다, 좀 진정을 하신 뒤에 연락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u>학교 업무시간 중에 학교 대표전회</u>를 통하여 전화로 상담을 하시거나, 방문 약속을 하고 기일을 지정하여 상담하시는 것 이 좋습니다. 또한, 유치원 및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지역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항목 부분 및 "공제급여지급기준"의 규정에 의한 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 학교와 상의하셔서 안내 받으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학부모와 함께하는 행복 학교 만들기



교원의 교육활동이 침해 될 수 있는 상황

< 이럴 때는 이렇게! > 자녀가 학교폭력에 연루된 경우

제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연루되었다는 학교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반에 대한 문의와 저희 자녀도 피해사실이 있다는 점 등에 대해 담임 선생님 혹은 학교폭력업무 담당 선생님과 상의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교에서 단체생활을 하다보면 학교 친구들끼리 다툼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학교목력예방법상 학생이 피해자인 사건은 학교목력으로 무조건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학교에서는 학생간의 다툼과 폭력 사건에 대하여 학교폭력전담기구,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통하여 사안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그렇기에 학교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보호자의견서 및 자녀분의 피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학교에 제출하셔서 사안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그리고 피해학생 학부모님과의 원만한 화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학부모와 함께하는 행복 학교 만들기



교원의 교육활동이 침해 될 수 있는 상황

< 이럴 때는 이렇게! > 성적에 대한 이의제기를 한 경우

저희 자녀가 작년과 다르게 성적이 무척 낮게 나왔습니다. 성적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하고 싶은데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기대치보다 낮은 성적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가는 기본적으로 담임선생님 혹은 교과선생님의 고유한 업무영역이며, 또한 담임 선생님 혹은 교과 선생님은 학생들의 성적을 평가할 때 상당한 고민을 거듭합니다. 이에 대하여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성적에 대한 안내와 동시에 정정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만일 학부모님께서 직접 자녀의 성적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싶으신 경우, 학교의 안내를 받아 공식적인 성적 이의신청 기간 동안 이의 신청을 하신 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출석하셔서 의견을 말씀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학부모와 함께하는 행복 학교 만들기



교원의 교육활동이 침해 될 수 있는 상황

< 이럴 때는 이렇게! > 학교와 생활지도로 인해 갈등이 생긴 경우

제 자녀의 두발상태에 대하여 학교에서 지적을 받아 자녀 생활지도에 관련하여 학교 와 상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담임 선생님과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님의 교육권, 그리고 교사의 교육권은 함께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활동을 보호한다는 의미는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님의 교육권이 보장된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이 보호될 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부모님은 교원의 교육과정을 편성할 권리와 교육방법을 결정할 권리, 그리고 학생을 지도하고 장계, 평가할 권리를 존중하며, 자녀의 학교생활에 의문이 생겼다면 선생님에게 먼저 상황을 자세히 물어보아야 합니다. 학부모님의 모든 문의나 의견 제시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담임 교사와의 상담을 추천 드립니다.

상담시에는 자녀의 두발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혹시 다른 이유는 없었는지 등에 대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와 함께하는 행복 학교 만들기



학부모의 정당한 교육활동 참여

- 학부모의 교육활동 참여 방법
- 학교알리미 활용
- 학교 운영위원회 활용
- 학부모회 참여
- 학부모 총회 및 각종 연수 참여
- 공개 수업 참여

O 학부모의 학교방문 절차



가정에서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가정교육의 중요성 인식하기 및 교원과 학부모의 관계 재정립하기

- · 가정교육이 튼튼하지 못하면 학교교육도 위험해짐 · 학생의 인권과 교원의 교육권: 서로 존중하고 원윈(win-win)하는
- · 학교 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생활습관,
- 관계성교육에는 한계가 존재함
- 가정교육을 통한 내면화가 필요함
- 사과과계
 - 교원과 학부모의 신뢰와 존중: 학생 보호와 교육을 위한 전제조건
 →학생의 학습의 보장권 보장, 전인적인 성장으로 이어짐
 - · 교원과 학부모: 자녀(학생)을 키우는 새로운 동반자와 같음
 - · 교원과 학부모의 역할의 연대 중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 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고교유	정상화법이	1라2
승╨퓩	성성권단이	lt!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학습 규제에 관한 특별법(2014.3.11.제정, 2014.9.13.시행)

_ 목적

- 초.중.고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
- 학교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 규제
- 교육기본법이 정한 교육 목적 달성
-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 도모

■ 선행학습의 의미

선행학습은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으로 학생이 사교육 등을 통해 다음 학기/학년/학교급에서 배워야 할 학교 수업 내용을 미리 공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선행학습의 폐해

이것은 통상적 예습의 범위를 넘어선 내용을 미리 학습하는 것으로 선행학습에 대한 사회적, 교육적 폐해는 심각하다 할 수 있으며, 그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른 학습자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침해

학생이 수업 내용을 미리 알고 있을 경우 학생 자신은 학교 수업의 적극성이 결여되고 교사는 학생들이 이미 알 있다고 판단하여 기본개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악순환으로 인한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이 침해를 받게 됨.

○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저하

학교교육과정은 학생의 인지, 정서 및 사회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고려하여 구성되어 있으나 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의 학습으로 충분히 사고하고 이해하려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떨어져 피상적이고 기계적인 문제풀이 학습에 치우치게 되어 사고력, 흥미도 및 집중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파생시키게 됨.

○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지나친 속도 경쟁

선행학습을 하는 내용이 곧 그 학생의 실력이라는 잘못된 편견(예: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중학교 1학년 수학을 하고 있으면 중학교 2학년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더 잘한다는 의식)으로 인하여 선행학습은 무한 속도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나 사고력 저하로 대학입시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음.

○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교육부가 발표한 2015년 유·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약 17조 8천억원으로 이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저출산과 노후 준비를 못하는 등 에듀푸어 양산은 중산층 붕괴를 가속화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7 청렴교육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 청탁금지법 주요골자

●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 교원 등이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으면 형사처벌 한다는 것!

1 청탁금지법 제정의의

-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과 국민신뢰 확보
- 선의의 공직자.공적 업무 종사자 보호

2 법률 적용대상

- 적용 대상기관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 공기관
 -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 적용 대상자
 - (공직자 등)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 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 공직자 등의 배우자
 - 일반국민 :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금품 등을 제공한 민간인
 - 공무수행사인
 - (*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자, 공공기관에 파견근무하는 민간인,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자)

부정청탁 행위유형(15가지)

1. 인가.허가 등 업무 처리

3

- 2. 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면제
- 3.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 4.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 5.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에 개입
- 6.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 7. 특정인 계약 선정.탈락에 개입
- 8.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 등에 개입
-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 10. 학교 입학.성적 등 처리.조작
- 11.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
- 13. 행정지도.단속 등 결과 조작, 위법 사항 묵인
- 14. 사건의 수사.재판 등 개입
- 15. 1번~14번 유형에 대한 지위.권한 남용

부정청탁의 금지

- 이해당사자(A)가 제3자(B)를 통하여 공직자(C)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 ☞ 이해당사자(A): 과태료(1천만원 이하)
 - ☞ 제3자(B): 과태료(일반인은 2천만원 이하, 공직자는 3천만원 이하)
 - ☞ 공직자(C): 직무를 수행할 경우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이해당사자(A)가 자신의 일에 대해 직접 공직자(C)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 ☞ 이해당사자(A): 처벌대상에서 제외
 - ☞ 공직자(C): 직무를 수행할 경우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금품 등 수수 금지

- 공직자 등과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금지 기준
 - ☞ 공직자 등과 배우자가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 벌(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 100만원 이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할 경우 과태료 부과(수수금액의 2~5배)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등
 -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 *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 * 경조사비 : 축의금 · 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 · 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 · 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 * 선물 :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 공직자 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등 또는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상 품
 -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청렴마인드

1 불법찬조금 정의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에 정해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조성한 금품임.

2 불법찬조금 유형

- 가. 학부모대표 등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학부모들로부터 일정액을 모금, 접수하는 경우
- 나. 간부학생 등의 학부모를 중심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하는 사례
- 다. 학교발전기금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학부모회, 학급임 원회, 운동부, 기숙사 등에서 임의적으로 접수 및 운영하는 사례
- 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학생 간식비, 학교행사 지원, 교직원 선물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하는 사례

- 마. 학교행사(스승의 날, 체육대회, 수학여행, 현장학습 등)시 교사의 도시락 및 간식, 학생 간식, 교직원 선물 등
- 바.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행위(현금 및 상품권, 고가의 명품백, 최근 카카오톡 선물과 같은 SNS 상품권 등)

3 불법찬조금 처리방법

- 가.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즉시 반환
- 나.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소속기관장(학교장) 또는 행동 강령관(교감 또는 원감, 교감이 없는 경우 학교장이 교사 중에서 지정)에게 신고 후 소속기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 다. 신고된 금품에 대한 행동강령책임관의 처리
 - 멸실·부패·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 ⇒ **폐기처분**
 - 멸실·부패·변질 우려가 있는 금품 등 ⇒ **사회복지시설 및 공익단체 등에 기증**
 - <u>기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u> ⇒ 기관(학교)홈페이지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u>전라</u> 북도교육비특별회계 또는 학교회계에 귀속

4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청렴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구현을 위하여 불법찬조금 관련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라북도교육청 신고센터
 - 홈페이지(www.jbe.go.kr)/전자민원/원클릭신고센터/촌지수수·불법찬조금신고
 - 불법찬조금 신고(☎ 063-239-3576 예산과)

□ 청렴의무 위반등 관련사항 신고

◇ 부패신고 문의처

- 전주초등학교 교무실 청탁방지담당관, 행동강령책임관 교감 ☎ 254-2373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통신 윤리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 개인정보라?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u>다른 정보와 쉽게</u>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 포함)



■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신설 (제24조의 2)

주민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용

<주민번호 예외적 처리 허용 사유>

-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번호 처리를 요구, 허용한 경우
- 2. 정보주제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신체, 생명, 재산 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 3. 기타 주민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 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정보통신윤리교육

- **인터넷중독이란?** 인터넷을 과다 사용하여 인터넷 사용에 대한 금단과 내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용자의 일상생활 장애가 유발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 인터넷 중독 예방 지침
 - 특별한 목적 없이 컴퓨터를 켜지 않기 컴퓨터 사용시간 가족들과 협의결정
 - 컴퓨터 사용 시간과 내용을 사용일지에 기록 알람 시계로 사용 시간 수시 확인
 - 운동이나 취미활동시간을 늘리기 인터넷으로 식사나 취침시간을 어기지 않기
 - 스스로 인터넷 사용조절이 어려울 경우, 시간 관리 소프트웨어 설치
- **스마트폰 중독이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울하거나, 초조함, 답답함을 느끼며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병적으로 집착한 상태
- 스마트폰 중독 예방 지침
 - 재미도 있고 도움도 되는 유용한 앱 활용 스마트폰 필요할 때에만 사용
 - 친구들과 눈으로 대화 때와 장소에 따라 적절히 사용
 - 시간제한 앱 깔고 푸시(알림) 기능 끄기 온라인에 글을 남길 때에는 신중하게 작성

■ 스마트폰 사용 습관 확인

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쉼센터 홈페이지 '스마트폰 과의존 유아동척도(관찰자용/성인용)' 활용 http://www.iapc.or.kr

■ 인터넷, 게임 이용 관리

- 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쉼센터 홈페이지 http://www.iapc.or.kr
- '스마트폰 과의존 유아동척도(관찰자용/성인용)' 활용
- pc 사용 관리 : 그린 I-net http://www.greeninet.or.kr

다양한 매체를 통해 유통되는 유해 정보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올바르게 방송 통신 정보를 이용하도록 구축한 '청소년정보이용안전망. 홈페이지에서 설치파일을 다운받으시거나 포털사이트 '그린 아이넷' 검색을 통해 다운 가능

- 스마트폰 유해 정보 차단 : 스마트보안관, 아이스마트키퍼 등
 - 청소년이 스마트폰에서 불법 유해정보(앱,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하고, 부모가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정보 및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모바일용 SW.
 - 부모 스마트폰에 설치한 경우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시간 · 앱 · 웹사이트 관리, 자녀 스마트폰 이용 통계 확인이 가능
 - 부모 및 자녀 스마트폰의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 T스토어, 올레마켓, U+스토어 등 오 픈마켓에서 다운로드하여 설치 가능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

■ 사이버 폭력의 유형 예시

사이버 폭력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근에는 다음과 같은 형태들이 있습니다.

최신 유형	설명
카카오톡 왕따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왕따 행위를 모바일 공간으로 옮겨와서 자행하는 것
와이파이 셔틀	스마트폰의 테더링 기능을 이용해서 피해학생의 스마트폰을 와이파이 공유기처럼 사용하는 것으로, 무선데이터 갈취를 통해 금전적 피해를 주는 것
게임 아이템 셔틀	게임을 하기 위해 필요한 아이템을 피해 학생에게 상납받는 행위

■ 사이버 폭력의 예방 방안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님들의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 1. 사이버 폭력에 대해 규칙적으로 대화를 나눈다.
- 2. 바른 언어습관의 사용에 대해 지도하고 모범을 보인다.
- 3. 사이버 폭력 피해 시 학부모님들의 직접 해결보다는 학교에 도움을 요청한다.
- 4. 자녀들의 온라인 활동(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등)에 관심을 가진다.
- 5. 컴퓨터 및 스마트폰에 음란물과 폭력물을 필터링하는 프로그램 혹은 앱을 설치한다.
- 6. 자녀들이 문제가 생길 경우 직접 해결하지 말고 어른과 상의할 것을 강조한다.
- 7. 스마트폰 및 인터넷 사용시간을 정하고 관리를 한다.
- 8. 사건이 발생했을 때의 처벌보다는 그 전의 예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 **사이버폭력 징호** 사이버 폭력의 징호를 알고 자녀의 상태를 점검해보세요.

혹시 우리 아이가 사이버폭력을 당하고 있지 않을까?

- ① 불안한 기색으로 자주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 ② 갑자기 용돈을 많이 요구하거나, 스마트폰 이용 요금이 많이 나온다.
- ③ 부모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 ④ SNS 프로필 사진이나 상태 메시지가 부정적인 내용이다.
- ⑤ 갑자기 SNS 계정을 탈퇴하거나 아이디가 없다.

■ 사이버 폭력 발생 시 대응 방안

만일 자녀가 사이버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 ① 해당 사실을 알았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한다.
- ② "절대 네 잘못이 아니야"라며 아이를 지지해주고, 끝까지 부모가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을 준다.
- ③ 자녀가 당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한다.
- ④ 가해자를 직접 만나 보복하지 않고, 담임 선생님 또는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 ⑤ 관련 기관과 상담하여 대처요령과 전체적인 처리 과정을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문자 상담/신고 #1388 (8소년 사이메상위(HII) 전화 상담/신고 117 (사다바라의 선교전화) 모바일 앱 상당/신고 117Chat 스마트 만성드림 온라인 상당/신교 www.wee.go.kr (미생위기상당중합시대스)

부모가 자녀에게 알려주는 성교육



성교육이 필요한 이유

성교육은 남, 녀의 성에 대한 지식과 임신 및 생리학적 지식만을 가르치는 것 뿐 아니라 성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지식을 가지게 하여 <u>건전한 인격을 형성할 수 있게 하는 인간교육</u>입니다.

- ① 아이들 몸의 성숙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 ② 스마트폰 등으로 인하여 아이들이 무분별한 성문화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2

성교육에 임하는 부모님들이 가져야 할 자세

- ① 성교육을 위해 부모들이 먼저 변화해야 합니다.
- 성에 대하여 엄격하며 금기시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자연스러운 생활의 일부로 인식하기
- 자녀들의 성적 성숙을 인정하여 현실감각을 갖고 개인적 특성을 고려해야합니다.
- ② 딸이나 아들 모두 상대방의 성 발달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 ③ 성교육은 과학적인 면과 사회적, 윤리적인 면을 병행하여 가르쳐야 합니다.
- ④ 질문에 답할 때는 당황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불충분한 대답이라도 좋으나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 ⑤ 자연스러운 대화의 분위기를 만들어 성교육을 합니다.
- ⑥ 정확한 성지식을 알고 있어야 잘 지도하므로 부모님들도 올바른 성에 대해 공부해야 합니다.
- ⑦ 부부간에 존중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 앞에서 자연스럽게 표현하도록 합니다.
- ⑧ 부모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전문교사나 상담기관을 찾습니다.



자녀와 성에 관한 대화 방법

- ① 텔레비전 뉴스나 드라마 등과 관련하여 자연스럽게 말할 기회를 찾습니다.
- ② 부모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기보다는 자녀의 생각을 듣고 소통하도록 합니다.
- ③ 성 문제에 관한 자녀의 감정을 존중하고, 자신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 ④ 자녀에게 말할 때는 하나의 주제만으로 이야기합니다.
- ⑤ 자녀를 지나치게 어린아이 대하듯 말하지 않습니다.



성범죄 예방을 위한 부모님의 역할

- ① 자녀가 자주 다니는 곳에서 집을 오가는 길에 위험 요소가 있는지 미리 둘러보십시오.
- ② 아는 사람이라도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하면 참고 있지 말고 단호하게 "싫다!" 라는 의사 표현을 하며 즉시 자리를 피하도록 알려줍니다. 신체 접촉 전 상대의 의사를 항상 먼저 물어보도록 알려줍니다. 상대가 대답하지 않으면 yes라고 생각하는 경우 때문에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응답은 yes가 아니라 NO일 수 있습니다
- ③ 호의를 베푼다고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거나, 아는 사람이라도 가족이 아닌 경우 단 둘이 집에 있게 하거나 차를 타지 않도록 알려줍니다.

- ④ 평소 성 지식에 대해 자연스럽게 알려주고 무엇이 성폭력인지 정확히 알게 해주십시오.
- ⑤ 평소 자녀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무슨 일이든지 부모님께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 ⑥ 청소년에게 성범죄 등의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으니 채팅 어플 사용 자제 지도

흡연 예방 교육



청소년 흡연과 건강

매년 우리나라 청소년의 흡연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최근 청소년 온라인건강행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세계 여러 나라 중 흡연시작 연령이 12.7세로 가장 낮은 편입니다.

담배와 담배 연기 성분에는 벤젠, 카드뮴 등과 같은 <u>제1군 발암물질</u>을 포함하여 69종의 발암 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u>7,000여종의 독성 및 유해 물질</u>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어린 나이의 흡연은 훨씬 더 해롭다.
 - 어릴 때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면 심신이 미성숙한 상황에서 담배 속 온갖 유해 물질에 노출되어 중독이 심해지고 신체 발달(특히 폐의 성장)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청소년기의 흡연습관은 성인기에도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니코틴 의존은 알코올 (술)이나 다른 의존성 약물에 중독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흡연예방을 위한 부모님의 역할

- 가. 금연 가정의 자녀들은 성장하여 흡연할 확률이 낮다고 합니다. 부모님께서 흡연을 하는 경우라면 금연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 나. 자녀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키지 않습니다.
- 다. 학생이 있는 장소에서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성장기 자녀가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습니다.

※ 간접흡연 & 3차흡연

- <u>간접흡연</u>이란, 흡연자가 내뿜는 담배 연기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이 들이 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상태를 말하며, '강요된 흡연' 혹은 '강제적 흡연'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 <u>3차 흡연이란, 흡연을 할 때 발생하는 독성물질이 가구, 옷, 장난감, 집 먼지 등의 표면에</u> 달라붙어 흡연이 끝난 이후에도 실내 환경에서 장기간 흡연 오염 물질이 배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코로나19 상황별 대응 안내(2022.3.14.(월)부터 적용)

◆ 코로나19 격리체계에 따른 검사 및 등교기준 ◆

구분	나의 상황			
— 下 正	기간	검사		등교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	격리(7일)	확진자는 격리해제 전 검사 (PCR 검사, 신속항원검사)는 하지 않음		격리기간 중 <mark>등교중지</mark>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 출근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 취약시설 등)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수동감시(10일)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확진된 동거인의 검사일 기준)		<mark>등교가능</mark> 기하게 미등교시 증빙자료 여 '출석인정결석' 처리
		※ 3일 이내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지정의료기관)로도 대체가능 ※ 10일 동안 매일 아침저녁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발열, 기침 등 증상이 관찰되면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		
본인 또는 동거인이 역학적 연관성 있어 PCR 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생은 등교 중지 권고		
본인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으로 PCR 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mark>등교(출근) 중지</mark>		

◆ 새로운 학교 방역수칙

- 1. 미접종자는 기본접종하기, 2차 접종 유효기간 만료 전 3차 접종하기(대상자에 한함)
- 2.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특히 감염위험시설(3밀(밀폐·밀접·밀집) 환경), 감염취약시설 (요양시설)에서는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착용하기
- 3.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로 가리고 하기
- 4. 상시환기를 원칙으로 하되, 기상상황 등으로 상시환기가 어려운 경우 쉬는시간 마다 환기(맞통풍)하고, 손이 많이 닿는 곳(문고리, 스위치 등)은 1일 1회 이상 소독하기
- 5.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하기
- 6. 아프면 검사 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60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 만남 자제하기
 -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참조(방역당국의 '새로운 생활 속 방역수칙'을 활용하여 학교에 적용)

학교에서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

병명	조기 증 상	등교 중지 기간	
홍역	귀 뒤에서부터 발진, 발열	발진 후 5일까지	
수두	발열, 발진, 수포	모든 발진이 딱지가 될 때까지	
유행성 이하선염	발열, 귀밑이 부어오름,	부어오른 귀밑이 가라앉을	
(볼거리)	식욕부진	때까지(약5일)	
인플루엔자	38도 이상 고열, 관절통, 두통,	열이 내리고 이틀이 지날	
인글구인자	호흡기 증상	때까지	
유행성 각결막염	안구 충혈, 안구통,	의사가 등교해도 된다는 진단	
	눈부심, 가려움증	(1~2주)	

- * 학생이 법정 감염병에 걸려 등교중지를 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 감염병이 의심되면 등교하기 전에 담임선생님께 전화 연락 후 병원에 갑니다.
- 병원 진료 후 감염병 진단을 받으면 담임선생님께 전화 후 격리 치료를 합니다.
- 완치되어 등교할 때 병원에서 의사확인서를 받아 담임선생님께 제출합니다.

3

감염병 전파(확산) 방지

- 학생이 열이 나거나 기침을 많이 하는 상태로 등교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친구들에게 감염병을 전파 시킬 수 있습니다.
- 감염병이 발생하면 충분한 휴식을 취해서 면역력을 높여야 하는데 무리하게 등교 하면 치료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해마다 감염병이 유행하고 새로운 종류의 감염병이 발생하여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감염병은 누구나 걸릴 수 있으므로 단체생활에서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여 감염병 발생을 조기에 차단합시다.

4

감염병 예방 지켜주세요

- 비누로 손 자주 씻기
- 평소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면역력 기르기
- 몸이 아플 때는 등교중지하고 담임교사에게 연락하기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



1. 미세먼지 실시간 농도 확인하기

- 에어코리아 홈페이지(http://www.airkorea.or.kr)
- 스마트폰 앱 "우리동네 대기정보" 설치: 우리동네 및 학교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확인



-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 야외모임, 캠프, 스포츠 등 실외활동 최소화
-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식약처 인증) 착용하기 : 폐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상의 후 사용 권고
- 외출 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 외출 후 깨끗이 씻기 : 샤워하고, 특히 필수적으로 손·발·눈·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기
-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 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야채 등 충분히 섭취하기
- 환지, 물청소 등 실내 공기질 관리하기
-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이용, 폐기물 태우는 행위 등 자제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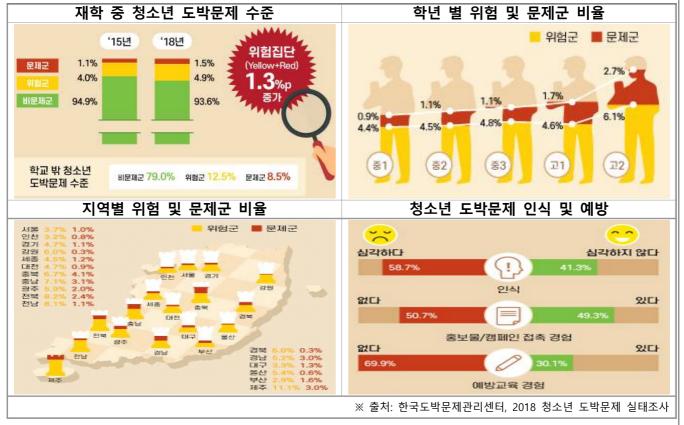
10

도박예방교육

학생들의 사행심('요행'을 바라는 마음)을 조장하는 유해 환경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부쩍 늘어난 뽑기방, 온라인 게임 상의 아이템 거래, 불법 도박 사이트 등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환경입니다. 이에 청소년이 주로 경험하는 사행성 게임의 유형, 자녀의 사행성 게임 문제가 있을때 나타나는 행동, 사행성 게임 문제 예방 및 대처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의 모든 도박행위는 청소년 보호법, 사행산업관련법에 의해 불법입니다

□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 및 언론보도



- '15년 조사대비 '18년 재학 중 청소년의 도박문제 '위험집단(위험군+문제군)'의 비율은 1.3% 상승(5.1%→6.4%)
- o 학년이 높아질수록 문제군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생이 1.0%, 고등학생이 2.2%로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약 2배 이상 높게 조사됨
- o 지역별로는 17개 시도 중 **충북(4.1%)**로 문제군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강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충남(3.1%), 경남과 제주(각3.0%) 비율로 조사됨
- o 청소년 도박문제에 대해 재학 중 청소년 **10명 중 6명** 정도가 '**심각하다**'라고 응답함, 그에 반해 도박문제 예방교육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인원은 30%에 불과함

<최근 언론 보도>

- ▶ [한마디] **청소년 온라인 도박 위험** 수위 넘었다 [조선일보 19. 2 .14]
- ▶ **도박에 물든 청소년**, 2차 범죄 우려 [금강일보 19. 1 .28]
- ▶ '도박에 빠진 아이들'... 교육 당국 예방교육은 미진 [뉴스핌 19. 1. 16]
- ▶ **청소년 불법 인터넷 도박**에 쓰는 돈, 평균치 10배 넘어 [아시아경제 18. 12. 25]
- ▶ 최근 5년간 **불법도박 입건 청소년 402명** [이데일리 18. 10 .22]

□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 유행하는 불법 사행성 게임



o SNS를 통한 불법 사행성게임 사이트 접근

- SNS, 인터넷 방송(아프리카 TV 등)을 통해 확산
- 청소년들이 이용자 **모집책인 총판**을 담당하기도 함(모집 이용자가 돈을 잃으면 10~30%, 돈을 따면 1~3%의 이익을 취함)
- o 불법 도박사이트의 경우 성인인증 절차가 없이 이메일 및 계좌번호만으로 가입 가능하여 쉽게 청소년들에게 노 출
- o 사행성게임: 불법 스포츠도박(사설토토), 불법 인터넷도박(사다리, 달팽이, 소셜그래프 등) ※ 게임 속 유료 확률형 아이템 또한 사행성이 높아 주의요망

□ 도박문제 발생의 징후 <금전문제> <도박행동> o 용돈을 자주 요구하거나 친구들에게 돈을 빌 리고 갚는 것이 자주 발생한다. ㅇ 집단으로 모여 친구들과 스마트폰을 보고 있 o 갑자기 기족이나 친구에게 고기의 선물을 하거나 용돈을 준 는 장면이 자주 목격된다. 다 o 도박 관련 용어나 은어를 자주 사용한다(토쟁이총판맥튀 등 ㅇ 스포츠 경기 결과에 민감하다. o 알 수 없는 명의로 입출금이 반복된 거래내역이 발견된 | 다 <가정생활> <대인관계> ㅇ 부모님께 거짓말 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무언 o 대인관계에서 짜증이나 신경질을 자주 낸다. 가 숨기려고 한다.(혹은 대화를 피한다.) o 딴 생각이 잦아지고 혼자 있으려 한다. o 가족의 돈을 훔치거나 집안의 귀중품이 없어진 ㅇ 금전거래로 인한 갈등이 발생한다. 다

□ 자녀가 사행성 게임에 빠져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하세요.

사행성 게임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부모의 격려와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o 자녀에게 문제가 있음을 받아들입니다.
- o 자녀를 윽박지르고 야단치기 보다는 왜 게임을 하게 되었는지, 게임으로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인지 경청합니다.
- o 학교에 문제를 알리고 전문적인 상담(1336)을 요청합니다

예방교육 신청 및 문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도박문제 전문상담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온라인 상담: 도박문제 넷라인(http://netline.kcgp.or.kr)			
홈페이지(http://www.kcgp.or.kr)	접속 후 채팅/게시판 상담 이용			
→예방홍보→예방교육→교육신청	전화상담 및 상담신청: 국번없이 1336 (24시간			
- 예방교육 문의: 예방사업팀 담당자(☎02-740-9032)	364일 상담 가능)			
[당부의 말씀]	우리인 상담은 도박문제 넷리인 전화상담 1 A2 3 헬프라인 전화상담			
자녀에게 문제 발견시 전문기관의 도움 이	원래산생은 도백문제 첫째인 https://netline.kcgp.or.kr			
최우선입니다	TICLIPO // TICCLITIC TROUGH (24시간 365일 운영)			